

「군포도시공사 자금운영위원회 운영내규」 일부개정내규를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.

군포도시공사 사장 배재



2025년 11월 21일

군포도시공사 내규 제 105 호

## 군포도시공사 자금운영위원회 운영내규 일부개정내규

군포도시공사 자금운영위원회 운영내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제4호를 제6호로 하고,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. 자금운용에 따른 재무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제안
5.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및 사후관리 관련 사항의 검토
6. 기타 군포도시공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

## 부 칙

이 내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 관 부 서		경 영 기 획 실
입 안 자	직 위 성 명	경 영 기 획 실 장 곽 성 우
	직 위 성 명	재 무 회 계 팀 장 최 중 환
	담당자 성명 (전 화)	김 강 훈 ( 3 8 0 - 5 8 2 2 )

## 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b>제3조(기능)</b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생 략)          4. 기타, 군포도시공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</p>	<p><b>제3조(기능)</b>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자문을 수행한다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  <u>4. 자금운용에 따른 재무리스크 분석 및 관리방안 제안</u>  <u>5. 자금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대응 및 사후관리 관련 사항의 검토</u>  <u>6. 기타 군포도시공사가 자문을 요청한 사항</u></p>